

민주연구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은 9월 16일(수),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의 다섯 번째 브리핑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기대효과를 밝히는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라고 밝히며, “기본사회는 이재명정부 사회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대선공약 이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등 물밑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추진체계의 법률상, 행·재정적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사회기본법은 이러한 기본사회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입법이며, 이와 관련한 두 건의 입법 내용을 비교, 정리하고 향후 입법 방향,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를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짚어보고 22대 국회의 입법 추진현황, 향후 입법 방향 및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를 정리했다.
- 첫째, 기본사회기본법의 필요성과 의미이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올해 4월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 후 기본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있는 동시에, 하반기부터는 국무조정실 숙의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AI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의제가 선정되어 국민숙의단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 방향 및 사회적 합의 형성이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현행 추진체계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률상 기반이 미흡하고, 중장기계획 및 재정지원, 지역 기본사회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사회 입법은 기본사회를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제도화하고,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 **둘째**, 22대 국회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기본사회기본법과 관련한 2건의 입법이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두 건의 입법 중 신정훈 의원안(「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의 정책 점검 및 권고, 통계·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거버넌스를 구체화한 장점이 있다. 반면 최혁진·김우영 의원안(「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은 기본서비스 영역 규정,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서비스 공급, 인공지능 활용 등을 명시해 기본사회의 정책 영역과 내용적 방향성을 구체화한 장점이 있다.
- **셋째**, 향후 입법 방향의 과제이다. 두 법안 모두 장점이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되 기존 법, 제도와 중복을 최소화하고 실제 정책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먼저 기본사회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여러 기존 위원회의 정책 범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기존 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존중하며 협의·연계 및 공동 조정을 통해 정책 조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법 역시 기존 사회보장기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기본법의 독자적 기능과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도 기초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법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본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게 재정계획과 재정원칙, 국가-지방 간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면서 정책평가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입법에 담겨야 한다.
- **넷째**,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이다. 브리핑은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기본법 제정은 기본사회가 미래 복합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으로 자리잡고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주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혁신적·실험적 정책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이러한 혁신의 주체가 되는 제도적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